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강감창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제2463호

다. 발의일자: 2018. 4. 2.

라. 회부일자: 2017. 4. 3.

2. 주 문

-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 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

3. 제 안 사 유

-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도 이후 미세먼지(PM-10) 농도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45 $\mu\text{g}/\text{m}^3$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초미세먼지(PM-2.5) 역시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그동안 환경부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함. 일례로,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높고, 교통이 37%, 비산먼지가 22%, 기타가 2%이지만,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 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 4천8백만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세움.
-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이와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획기적인 미세먼지 근본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기타사항 : 없음

5. 이 송 처

가. 국 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 부 : 환경부

6.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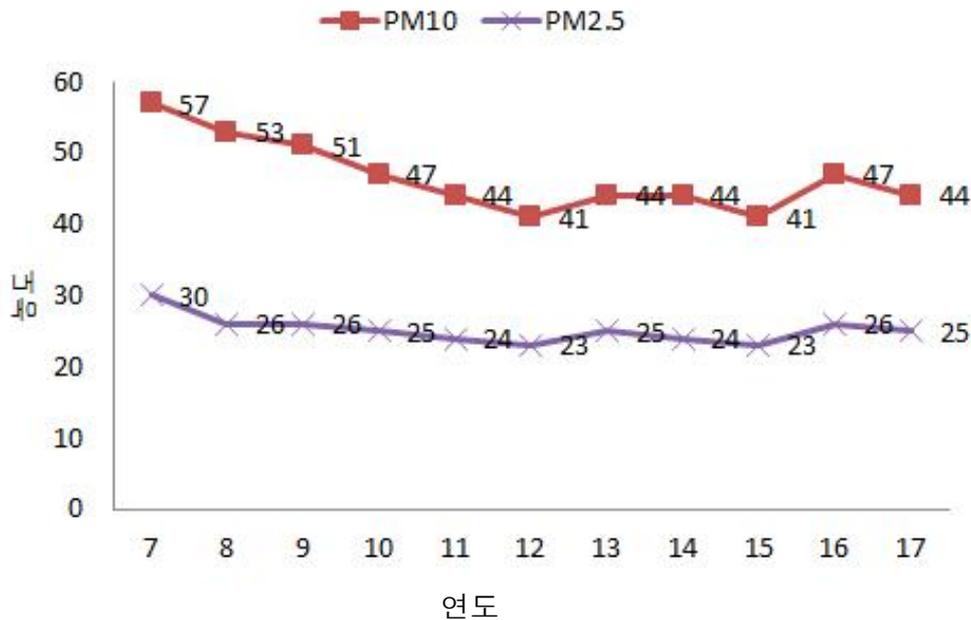
나. 검 토 의 견

1) 미세먼지

- 미세먼지는 지름이 $10\mu 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2.5\mu m$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¹⁾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 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
-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청정연료사용, 서울

1) 초미세먼지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미세먼지(PM2.5)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였음

시내버스의 천연가스(CNG)차량으로 교체,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미세먼지 연평균농도 변화

- 그러나 2011년도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²⁾ 이내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44\mu\text{g}/\text{m}^3$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초미세먼지 역시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의 경우, 2015년 10일, 2016년 13일, 2017년 20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환경기준

항목	단위	구분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비고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연간평균치	50	50	
		24시간평균치	100	100	
초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연간평균치	15	15	2017년까지 연평균기준 25이었으나 2018년 3월 27일자로 기준이 강화되었음
		24시간평균치	35	35	

<표 1> 최근 3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

구분	PM10 나쁨($81\mu\text{g} / \text{m}^3$) 이상 일수			PM2.5 나쁨($51\mu\text{g} / \text{m}^3$) 이상 일수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국(평균)	26	15	13.5	13	10	10.2
서울	25	24	22	11	13	20
부산	21	18	9	11	18	4
대구	27	17	7	18	9	3
인천	42	18	20	37	16	14
광주	23	15	12	20	10	8
대전	29	19	12	29	9	6
울산	22	13	10	13	8	7
세종	-	16	16	-	2	10
경기	39	36	30	22	15	22
강원	28	16	14	28	13	14
충북	39	24	13	28	26	19
충남	27	15	18	32	25	9
전북	40	34	24	47	36	24
전남	9	9	4	15	11	1
경북	18	8	6	27	29	5
경남	18	17	6	9	10	3
제주	22	17	7	15	10	4

-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수도권외 11%, 중국 등이 55%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음.



<초미세먼지(PM2.5)의 지역별 배출원별 배출비율>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내놓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금년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무료지원(145억원)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2월 27일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권 지자체 및 환경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민간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³⁾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3) 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 신창현 의원 등이 “차량2부제”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전문위원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통과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임.